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2.

발 의 자 : 김기현 · 강명구 · 우재준
김미애 · 김기웅 · 강대식
이인선 · 김승수 · 이만희
한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,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인범죄,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,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·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,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·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조

등).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”를 “강도범죄, 스토킹범죄 및 방화범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5. “방화범죄”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.

가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(현주건조물 등 방화)·제165조(공용건조물 등 방화)·제166조(일반건조물 등 방화)·제167조(일반물건 방화)제1항·제168조(연소)의 죄 및 제174조(미수범)의 죄(제164조제1항, 제165조,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)

나. 「산림보호법」 제53조의 죄

다.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화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

구할 수 있다.

1. 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
2. 방화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
3. 방화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
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특정범죄”란 성폭력범죄,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인범죄, <u>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</u>를 말한다.</p> <p>2. ~ 3의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u>강도범죄, 스토킹범죄 및 방화범죄</u>-----.</p> <p>2. ~ 3의4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5. “방화범죄”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(현주건조물 등 방화)·제165조(공용건조물 등 방화)·제166조(일반건조물 등 방화)·제167조(일반물건 방화)제1항·제168조(연소)의 죄 및 제174조(미수범)의 죄(제164조제1항, 제165조,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「산림보호법」 제53조의 죄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다.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</p>

4. (생략)
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
 ① ~ ⑤ (생략)
<신설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

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4. (현행과 같음)
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
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화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

2. 방화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

3. 방화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
⑦ -----제6항-----

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작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보호관찰명령”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 -----제6항-----

-----.

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